

**군용비행장 ·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
법률 일부개정법률안**
(이상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06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10.

발 의 자 : 이상희 · 김성원 · 안철수
우재준 · 박정훈 · 김기현
정동만 · 최수진 · 박성훈
김장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 · 소득증대사업 등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「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과 달리 현행법은 군소음대책지역 내 사업 실시 근거가 미비하여, 항공기 운용으로 인해 동일한 소음 피해를 겪는 군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유사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임.

또한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에게 소음영향도, 실제 거주 기간 등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,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상금의 실제 지급액이 매우 낮아지는 등 주민의 소음피해가 충분히 보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

고, 아울러 소음피해 보상금의 공제나 감액 지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군용항공기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등).
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“소음대책사업”이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
5의3. “주민지원사업”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.

가. 주민복지사업: 공동이용시설(도서관, 체육공원 등) 설치,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

나. 소득증대사업: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

다.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

제7조제2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소음대책사업

3의3. 주민지원사업

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) ①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

2.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지원사업

가. 「교육기본법」 제9조에 따른 학교

나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

다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(老幼者)시설

4.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 및 지원사업 대상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·고시될 당시의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주거·교육·의료·공공시설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한정한다.

③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외되는 지역안의 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

1. 방음시설 설치사업
2. 텔레비전 수신 장애 방지사업
3. 학교 냉방시설 설치사업

④ 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조의3(주민지원사업의 계획수립 등) ①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(이하 “지원사업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(이하 “소음대책 인근지역”이라 한다)을 지원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.

③ 국방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·고시할 때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협의하여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지정·고시할 수 있다.

④ 국방부장관이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하여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⑤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교육감(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에 한정한다)이 시행한다.

⑥ 국방부장관은 주민지원사업 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.

⑦ 제6항에 따른 사업비 보조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3조의 제목 중 “보상금”을 “보상금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지급할”을 “지급하고,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지급하되,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”를 “지급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으로 본다. 다만,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포함하여야 할 사항 중 종전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체 없이 계획을 수립·변경하여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5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<u>5의2. “소음대책사업”이란 군용 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</u> <u>5의3. “주민지원사업”이란 소음 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.</u> <u>가. 주민복지사업: 공동이용 시설(도서관, 체육공원 등) 설치,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</u> <u>나. 소득증대사업: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</u>

6. (생 략)

제7조(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
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
계획의 수립) ① (생 략)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
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4. · 5. (생 략)

③ · ④ (생 략)

<신 설>

치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
수 있는 사업으로 대통령
령으로 정하는 주민지원사
업

다.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
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
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통
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
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
조례로 정하는 주민지원사
업

6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
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
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
② -----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3의2. 소음대책사업

3의3. 주민지원사업

4. · 5. (현행과 같음)
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제7조의2(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
립 등) ① 국방부장관은 기본
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
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소음대

책사업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사업

2.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냉방

시설의 전기료 일부지원사업

가. 「교육기본법」 제9조에 따른 학교

나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

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

4호에 따른 시설 중 국방

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

거용 시설 및 주민 공동이

용시설

다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

11호에 따른 노유자(老幼

者)시설

4.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 및 지원사업 대상은 제5조

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·고시될 당시의 소음

대책지역 안에 있는 주거·교

<신 설>

육·의료·공공시설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한정한다.

③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외되는 지역 안의 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

1. 방음시설 설치사업

2. 텔레비전 수신 장애 방지사업

3. 학교 냉방시설 설치사업

④ 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조의3(주민지원사업의 계획수립 등) ①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(이하 “지원사업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

밖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(이하 “소음대책 인근지역”이라 한다)을 지원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.

③ 국방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·고시할 때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협의하여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지정·고시할 수 있다.

④ 국방부장관이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하여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⑤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교육감(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에 한정한다)이 시행한다.

⑥ 국방부장관은 주민지원사업 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.

⑦ 제6항에 따른 사업비 보조

제13조(소음피해 <u>보상금</u> 재원 마련 의무)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(이하 “보상금”이라 한다)을 <u>지급할</u>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. 제14조(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 절차 등) ① 보상금은 소음영향도,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<u>지급하되,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.</u> ② ~ ⑥ (생략)	<u>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 제13조(소음피해 <u>보상금 등</u> 재원 마련 의무) ----- ----- ----- -----<u>지급하고,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</u>-----. 제14조(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 절차 등) ① ----- ----- -----<u>지급한다.</u>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--	--